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

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

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식회사
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
TLPR
NMR84
R-R-EH7-NMR84
Endress+Hauser SE+Co.KG / 독일
2021-06-15

위 기자재는 「전파법」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.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, Article 58-2 of Radio Waves Act.

2021년(Year) 06월(Month) 15일(Day)

국립전파연구원장

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

※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"**적합성평가표시**"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.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




